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6부속서 비준 시 법적 쟁점



2015. 3. 13
극지연구소 서원상

How many people go to Antarctica as tourists and where do they come from?

Antarctica Tourist Numbers 2012 - 2013
Seaborne, Airborne, Landed and Cruise

Country of Origin	Numbers	Percentage
United States	6,908	27.3
Germany	3,398	13.4
Australia	3,280	13.0
China	2,188	8.7
United Kingdom	1,923	7.6
Canada	984	3.9
France	918	3.6
Switzerland	845	3.3
Others	4,840	19.1
Totals	25,284	100.0

[출처]

http://www.coolantarctica.com/Antarctica%20fact%20file/science/threats_tourism.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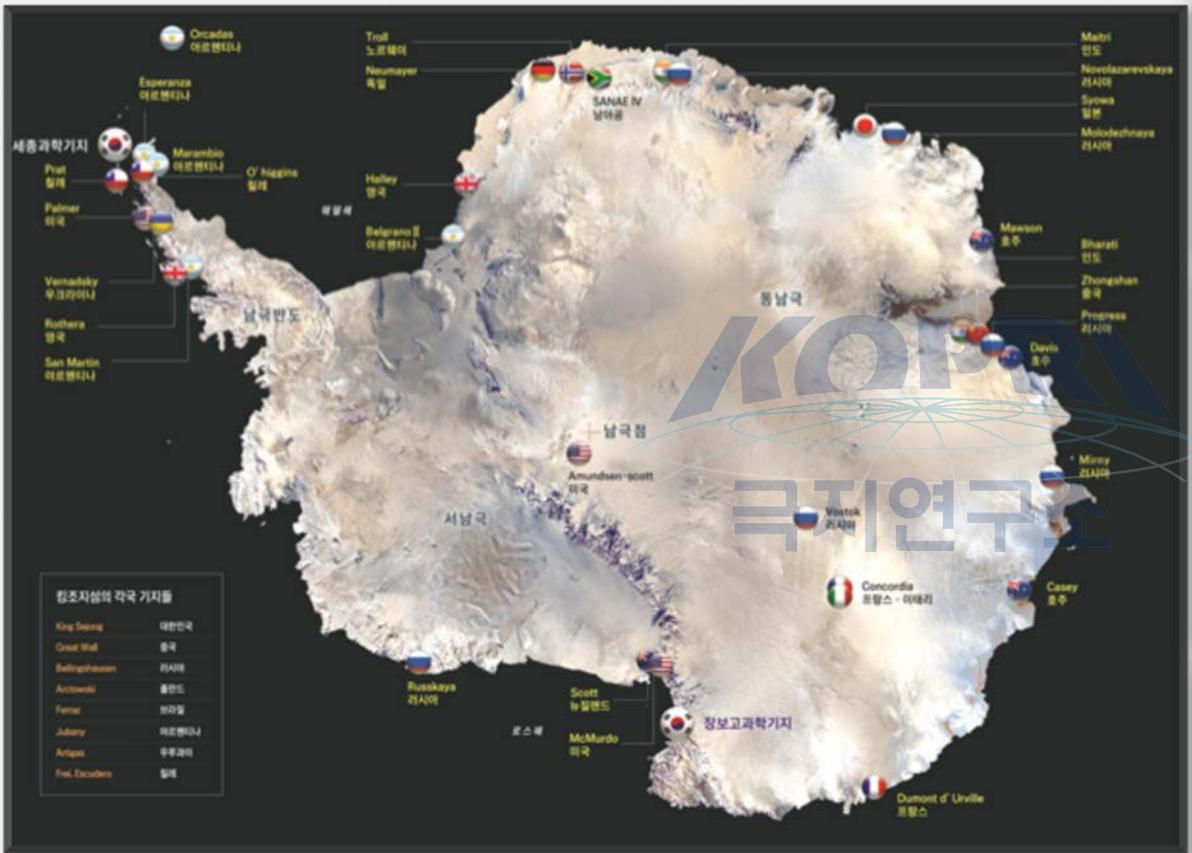
What do tourists do once they are in Antarctica?

Antarctica Tourist Activities 2012 - 2013

Activity	Numbers	Percentage
Small Boat Landing	189,386	37.5
Ship Cruise	168,518	33.4
Small Boat Cruising	88,030	17.4
Extended Walk	15,610	3.1
Station Visit	13,250	2.6
Kayaking	13,113	2.6
Aircraft Landing	2,805	0.6
Camping	2,565	0.5
Ice Landing	2,400	0.5
Anchoring Only	1,930	0.1
Ice Walk	1,842	0.4
Other	1,444	0.3
Scuba Diving	1,183	0.2
Helicopter landing	668	0.1
Climbing	640	0.1
Skiing	611	0.1
Helicopter Flight	291	0.1
Remote Underwater Vehicle	125	0.4
Science Support	113	0.1
Aircraft Flight	106	0.1
Totals	505,269	100



M/V Explorer호 좌초 (2007)





목차

1. 남극조약체제의 환경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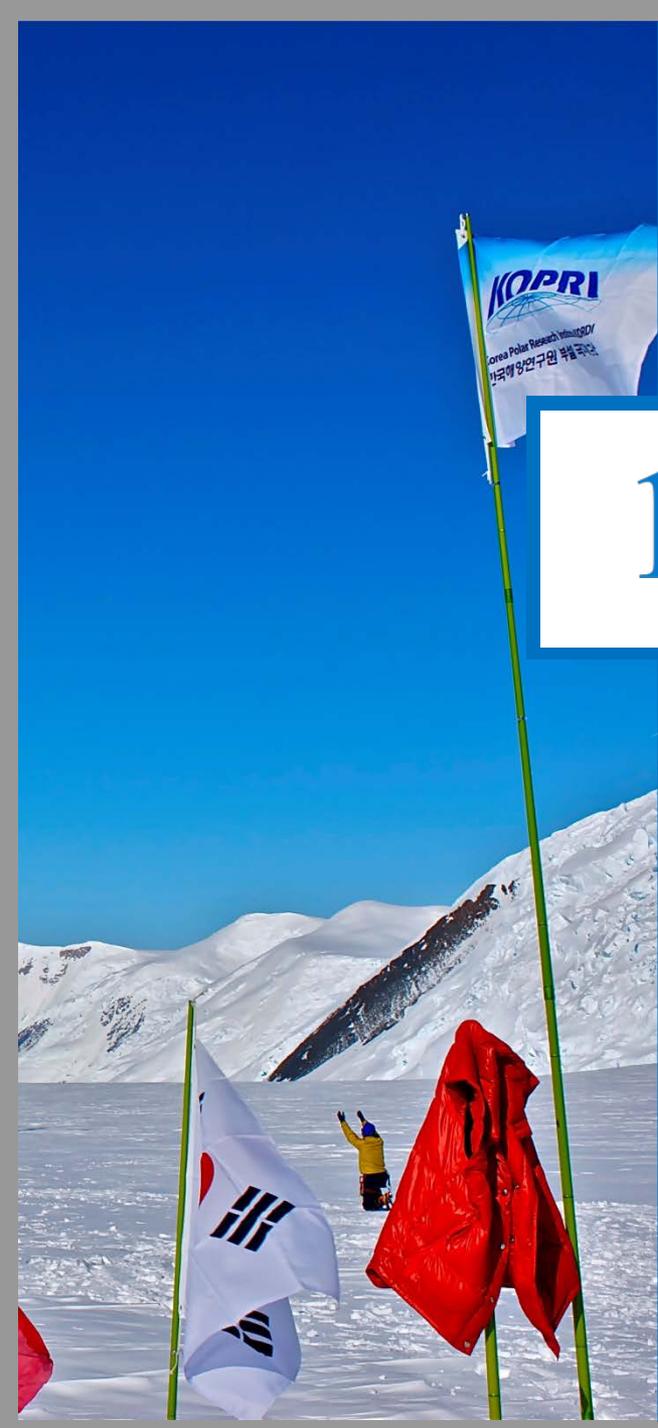
2. 제6부속서의 주요 내용

3. 제6부속서의 비준 시 쟁점 사항

1

남극조약체제의 남극환경보호

KOPRI
극지연구소





1-1. 남극조약체제 개관

남극조약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남극 환경보호관련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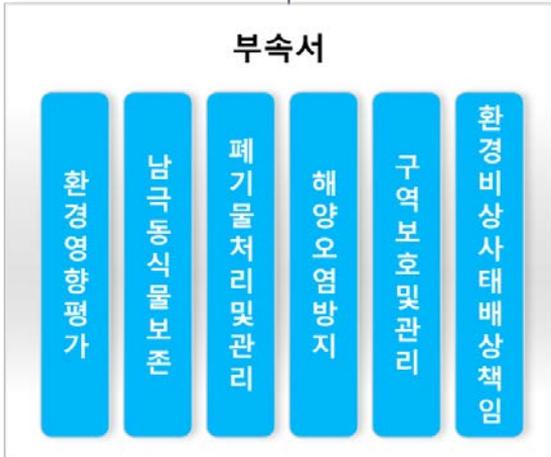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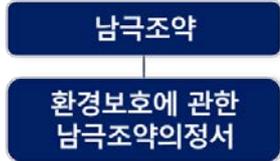
- 남극물개보존협약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부속서

- 환경영향평가
- 남극토양조사
- 폐기물처리및관리
- 해양오염방지
- 구역보호및관리
- 환경비상사태배상책임



1-2. 남극조약



조약체결 배경

- 1957, 1958년 국제과학연맹이사회가 주관한 '국제지구 물리관측년(IGY)'의 성공적 개최
→ 남극의 과학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
- 1958년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창설
→ 남극연구를 위한 국가간 조정기제 필요

극지연구소 남극조약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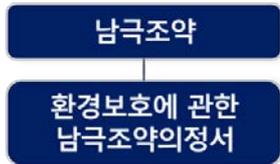
- 1959. 12., 미국 워싱턴에서 남극조약 채택
→ 남극대륙에 대한 국가들간 영유권 분쟁 동결
→ 남극에 대한 평화적·과학적 이용 보장

남극조약의 한계

- 1950년대, 국제사회가 "환경보호"에 주목하기 이전
→ 남극조약에는 환경보호 관련 규정이 없음



1-3.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및 부속서



부속서



조약체결 배경

-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CRAMRA) 비준거부(1991)
 - 남극광물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 의정서로써 남극조약의 "환경보호" 보완 필요

의정서 탄생

- 1991. 10., 제11차 특별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
 - 남극광물자원활동 금지(제7조)
- 5개 부속서 채택 → 환경영향평가, 남극동식물보존, 폐기물처리 및 관리, 해양오염방지, 구역보호 및 관리

비상대응 및 책임제도

제15조 (비상대응조치)

“각 당사국은 남극조약 지역 내의 과학적 연구활동, 관광 및 정부 비정부 활동수행 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 대응조치**를 제공하고,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6조 (배상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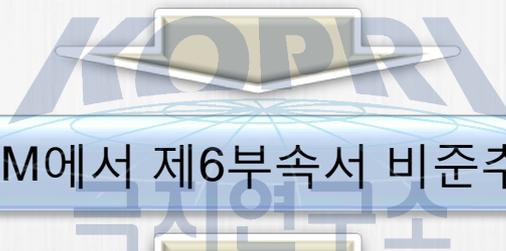
“각 당사국은 남극활동과 환경보호의정서 범위 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에 대한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1-4. 제6부속서 비준 관련 동향

제6부속서 발효 요건 : ATCM의 모든 협의당사국(29)의 비준



현재 비준국 수 : 11개국



우리나라(외교부) : ATCM에서 제6부속서 비준추진 선언(14번째 이내 목표)



비준 시 : 제6부속서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 및 제도마련 필요



이행입법 제정 시 : 정부부처 간, 운영자 간 입장 조정 필요

2

제6부속서의 주요 내용

KOPRI
극지연구소





2-1. 개요

제6부속서의 구성

- 전문
- 제1조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 제3조 예방조치
- 제4조 비상계획
- 제5조 대응조치
- 제6조 배상책임
- 제7조 소송
- 제8조 배상책임의 면제
- 제9조 책임의 한도
- 제10조 국가의 배상책임
- 제11조 보험 및 기타 재정적 보증
- 제12조 기금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조치, 행정적 조치 및 법령채택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사국 면책사유)



운영자는

1.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2.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 **운영자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4. 이에 **실패한 운영자**는 타 당사국이 취한 대응조치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
5. 그 배상책임의 부담을 위하여 보험 또는 은행 및 기타 **재정적 보증**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운영자는...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하여...

운영자(operator)란?

“정부기관 또는 비 정부기관을 불문하고, 남극조약 지역 내에서 수행될 **활동을** 조직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2.(c)]

✓ 활동(activities)의 범위

- 과학조사 프로그램
- 관광
- 관광선박 등 선박활동(단, 어선제외)
- 기지운영 및 보급, 탐험, 기타 남극조약 제7조 5항의 사전 통고가 필요한 모든 활동

환경적 비상사태(environmental emergency)란?

“남극 환경에 중대하고 해로운 영향을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영향을 초래할 급박한 위협이 있는 **우발적인** 사건(accidental event)” [2.(b)]

✓ 우발성의 범위

- 남극활동 계획 시 예견되지 않은 경우 : liability
- 남극활동 계획 시 예견되었거나 예견될 수 있었던 경우 : responsibility

예방조치(preventative measures) 의무

“환경적 비상사태와 그 잠재적 부작용(adverse impact)의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고안된 합리적 예방조치를 실시” [3.1]

✓ 예방조치의 범위

- 시설물과 운송수단의 설계 및 제작에 포함된 전문적(specialised) 구조물 또는 설비
- 시설물과 운송수단의 운영 및 유지에 포함된 전문적 절차
- 인력의 전문적 훈련 등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 수립 의무

“남극 환경 또는 그에 종속되고 연관되는 생태계에 대하여 잠재적 부작용을 수반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그 형식화와 이행의 협력” [4.1]

✓ 비상계획의 구성요소

- 사고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통고절차, 자원의 확인 및 동원, 대응계획, 훈련, 기록관리, 동원해제 등



2-4.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대응조치(response action)란?

“환경적 비상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비상사태의 영향을 방지, 최소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합리적인 조치” [5.1]

✓ 합리적인(reasonable) 조치의 기준

-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비례성을 갖추고,
- 남극환경에 대한 위해 및 그 자연적 회복가능성,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 기술적 및 경제적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 기준과 정보의 이용가능성에 근거할 것

운영자가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운영자의 당사국, 타 당사국들, 이들이 허가한 운영자와 대리인 등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 [5.2]

“타 당사국들은 대응조치의 의사를 그 운영자 당사국과 남극조약 사무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5.3]

→ 불필요한 제3국의 사적 운영자의 개입 차단



2-5. 실패한 운영자는... 타 당사국에 대한... 배상책임을...

배상책임의 주체

“환경적 비상사태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이행하는데 실패한 운영자” [6.1]

배상책임의 성격

“Liability shall be strict” [6.3]



배상책임의 내용 [6.2]

✓ 당사국이나 제3국이 대응조치를 실시한 경우

- 국가운영자나 비 국가운영자 모두 대응조치를 실시한 당사국 또는 제3국에게 배상책임을 부담

✓ 대응조치를 실시한 국가가 없는 경우

- 국가운영자는 직접 실시했어야 할 대응조치 비용을 (남극조약 사무국) 기금에 지불
- 비 국가운영자는 실시했어야 할 대응조치의 비용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을 지불



2-6. 배상책임을 위하여... 보험, 은행 등... 재정적 보증을...

재정보증 의무

“운영자는 제3자의 대응조치 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 은행 기타 유사한 재정적 보증을 보유하여야” [11.1, 11.2]

“당사국은 과학연구 증진활동을 수행을 포함한 자국의 국가 운영자에 대하여 자기보험(self-insurance)을 유지할 수 있다” [11.3]

책임 및 보증의 한도

✓ 선박이 포함되지 않은 사고 : 최고 300만 SDR

✓ 선박을 포함한 사고

- ① 2,000톤 이내 선박 : 최고 100만 SDR
- ② 2,000톤 이상 선박 : 위 ①에 더하여,
 - 2,001톤~30,000톤 : 톤당 400 SDR,
 - 30,001톤~70,000톤 : 톤당 300 SDR,
 - 70,000톤 초과 시 : 톤당 200 SDR 추가

※ '아라온'호

* 규모 : 7,487톤

* 한도 : 약 320만 SDR
(약 54억 7천 만원)

3

제6부속서 비준 시 쟁점

KOPRI
극지연구소





3-1. 입법의 형식적 쟁점

비준 필요성 및 시기

- 정부 관련 부처간 협의 필요

이행입법의 방식

- 제6부속서 이행법률 제정 vs.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담당 부처

- 극지 담당 업무
- 제6부속서의 소송 당사자 업무 (소송절차 진행, 배상액 산정 등)



3-2. 재정보증 제도 마련

보험 및 은행 상품 존재여부

- 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금융상품이 존재하는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준비 제도는?

자기보험 운영방안

- 남극연구기관의 자기보험을 위한 예산 편성 검토



3-3.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의 예방조치, 비상계획, 대응조치

- 환경비상사태 대비 시설 확보 및 인력 훈련 프로그램 마련

형사처벌 규정 여부

- 배상책임을 유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할 것인가?

운영자의 범위

- 극지연구기관에 국한시킬 것인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지연구소